

보내는 사람

“캐릭터 또는 로고”

받는 사람

입영 통지서

통지번호: _____

※ 뒤쪽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성명	생년월일
세대주 성명	관계
주소	
입영부대	입영일시
모이는 장소	
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20조,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

직인

유의사항

-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
-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원 또는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(재신체검사원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만일, 연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입영하시더라도 입영 후 군 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가조치될 수도 있습니다.
- 입영여비 수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뒷면 “여비수령 및 반납안내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여비지급 금액/시기: 입영여비 원(입영 후 5일 이내)
여비지급 방법: 본인 계좌로 입금 (단, 병무청에 등록계좌가 없어서 아래 “우체국방문 수령”에 √ 표시된 사람은 우체국에서 수령)

통지번호 _____		여비를 받았을 때 (영수증)	
성명			
생년월일			
입영일			
입영부대			
금액			
◆ 유의사항 여비를 찾으신 후 입영하지 못한 경우 입금정보 "보내는 분"에 반드시 본인 이름을 적은 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취급국날짜도장	
◆ 반납계좌 우체국 000-000-0000000			
(본인 보관용)			

통지번호 _____		여비를 찾으실 때 [] 계좌입금 [] 우체국방문 수령				
가입자 성명						
계좌번호						
성명						
생년월일						
입영일/부대						
여비지급기간						
금액	십만	만	천	백	십	일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			취급국날짜도장	
년 월 일						
영수인		(서명 또는 인)				
(우체국 보관용)						

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

○ 입영 시 유의사항

1. 입영통지서,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(이하 "나라사랑카드"라 하며,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함)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,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2.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기술자격 또는 면허취득자는 그 자격 또는 면허증 원본이나 사본을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.
3. 입영 시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단정하게 하시고, 복장은 간소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며, 세부 품목은 각 군이나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일부 물품은 입영 시 지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입영부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참이 불가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.
5. 입영 후 현금카드, 휴대전화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, 훈련기간 중 지급되는 봉급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니 입영 시 현금을 지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나라사랑카드에 소액(1~2만원) 입금 후 입영은 가능(귀가 등 유사시 필요)합니다.
6. 재학생은 입영으로 인한 휴학(일반휴학에서 군 입영휴학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)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입영하시기 바라며, 개인소지 휴대전화의 일시정지(군입대 사유), 명의변경 및 인터넷 사이트(유료) 해지는 입영 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(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 가능).
7. 복직보장 안내: 「병역법」 제74조에 따라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 입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처벌규정: 1.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,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(성명, 연령, 주소 등)을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합니다.
2.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

입영일자 연기 등 안내

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(긴급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후 3일 내 민원서류 제출).

○ 입영일자 연기 사유

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
- 질병 또는 심신장애
-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, 대학(원) 입학시험 응시
- 각 군 모집시험 응시 및 선발 등

○ 보충역, 전시기로역 사유 등

- 보충역
 -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
 -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 - 부모·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·순직자가 있거나 전상(戰傷)이나 공상(公傷)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
- 전시기로역
 -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
 -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

○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 제출안내

-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·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입영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

-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거나,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.
-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.
 - ※ 입영 전 과다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영 시 병무용 진단서, 수술기록지, 방사선 필름 등을 지참하시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 참고하게 됩니다.
- 현역의 특기분류 및 부대배치
 - 신병 군사특기 분류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최적의 특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 - 부대배치는 개인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무작위(랜덤) 방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사청탁의 유효를 받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인터넷 : www.army.mil.kr/unitarng
 - 입대전 육군 복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육군본부 누리집(홈페이지) 육군 복무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여비수령 위임장

- 입영여비를 아래 사람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위임자(병역의무자)

- 성명: (서명 또는 인)
- 생년월일:

☞ 대리 수령자

- 성명: (서명 또는 인)
- 생년월일:
- 주소:
- 관계: 연락처(☎) :

대리수령자는 신분증 지참

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

- 앞쪽 하단 "여비를 찾으실 때"의 "우체국방문 수령"란에 √ 표시된 사람의 입영여비는 지급기간 동안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아야 합니다.
 - ☞ 입영통지서(앞쪽 서식), 신분증 지참
 - ※ 여비 지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으로 문의(연락)하시기 바랍니다.
- 앞쪽 하단 "여비를 찾으실 때"의 "계좌입금"란에 √ 표시된 사람은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로 여비가 입금됩니다. 여비입금계좌를 등록(변경)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- 여비 지급액은 주소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연기 또는 가사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할 경우 여비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, 이미 찾으신 경우에는 앞쪽의 "여비를 받았을 때"에 적힌 유의사항에 따라 찾으신 여비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